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다10614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재판경과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다10614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8. 12. 26 선고 2008나2618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11. 29 선고 2006가단440182 판결

따름판례

대법원 2016. 8. 17 선고 2015두51132 판결

전문

원고(선정당사자), 피상고인

김○○

순천시 ○○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후

피고, 상고인 1. ○○ 주식회사

서울 ○○

대표이사 송○○

2. ○○주식회사

경기 ○○

대표이사 주○○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담당변호사 유@담, 김△직, 함♡용, 박◆민, 이◇, 김△완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환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08. 12. 26. 선고 2008나2618 판결

판결선고 2010. 3. 25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시장 또는 군수가 유류에 부과되는 일정한 세액 등 인상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운수사업자에게 보조할 수 있도록 한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2008. 3. 21. 법률 제89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9조 제2항의 유가보조금제도는 유류세 인상으로 인한 운수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규정에 의한 유가보조금은 운수사업자로서 실질적으로 유류비를 부담한 이에게 종국적으로 귀속되어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심이 채택한 증거 및 기록에 의하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및 운송주선사업을 영위하는 피고들은

판시 화주(貨主)회사와의 사이에 화주회사가 생산하는 우유(이하 ‘이 사건 화물’이라고 한다)에 관한 운송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화주회사로부터 실제 운송에 소요되는 유류비를 포함하여 운송료를 지급받기로 한 사실, 피고들은 위와 같이 운송을 의뢰받은 이 사건 화물을 지입차주인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하 ‘원고 등’이라고 한다)에게 배분하여 운송하도록 하면서 원고 등과 사이에 운송에 소요되는 유류비는 피고들이 부담하고 원고 등에게는 이 사건 화물 운송의 대가로 ‘월대’라는 이름으로 매월 일정액의 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피고들은 자신의 비용으로 미리 유류를 구입하여 지정 주유소에 보관하고 원고 등으로 하여금 운송에 필요한 유류를 위 주유소에서 공급받도록 함으로써 원고 등과의 위 약정에 따른 유류비를 부담해 온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 등이 이 사건 화물의 운송에 대한 대가로 피고들로부터 받는 돈은 유가의 변동과 무관하고 달리 원고 등이 이 사건 화물의 운송에 소요되는 유류비를 부담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 등은 이 사건 화물의 운송에 소요된 유류비의 실질적인 부담자가 아니어서 그에 관한 유가보조금의 귀속자라고 할 수 없다. 한편 이 사건 화물의 운송에 소요된 유류비의 실질적 부담자는 그 유류를 직접 구입한 피고들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화물의 운송과 관련하여 지급되는 유가보조금은 피고들에게 귀속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지입차주에게 유가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한 정부의 지침에 따라 그 유가보조금이 지입차주인 원고 등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원심은 원고 등이 이 사건 화물의 운송에 소요된 유류비의 실질적인 부담자로서 원고 등에게 그 유가보조금이 귀속되어야 한다는 전제 아래 피고들이 지입차량의 관리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원고 등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유가보조금을 원고 등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는 이 사건 화물의 운송에 소요된 유류비의 실질적 부담자 및 유가보조금의 정당한 귀속자에 관한 법리 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취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김지형 대법관 양승태 대법관 전수안 주 심 대법관 양창수

선 정 자 목 록

1. 김○○

순천시 ○○

2. 김○○

광주 ○○

3. 홍○○

남양주시 ○○

4. 오○○

논산시 ○○

5. 박○○

정읍시 ○○

6. 김○○

정읍시 ○○

7. 이○○

정읍시 ○○

8. 김○○

정읍시 ○○

9. 공○○

청주시 ○○

10. 김○○

충북 ○○ 끝.